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공포)

제 명: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사유

-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의정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원격출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가 자정까지 산회·유회되지 못하는 경우 자동으로 산회·유회되도록 하여 회의 운영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회기 전체 및 당일 의사일정 작성·배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 범위를 규정하여 의사일정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 발언과 관련한 조치계획 또는 처리결과를 해당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하여, 발언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책·행정에 반영되도록 함.

주요내용

- 정당 소속의 표기 (안 제2조의2)
- 후보자 등록 (안 제8조2)
- 회의에 관한 선포 (안 제14조)
- 의사일정의 작성 (안 제9조)
- 의사일정의 변경 (안 제17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송 승 환



2025년 10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제58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당 소속의 표기) 의회에서 각종 자료에 정당 소속을 표기할 때에는 당시 소속의원의 의석수가 많은 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 중에 정당 소속별 의석수의 변동으로 그 순서가 변경된 때에는 해당 자료를 다시 발행할 때까지 종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의2제1항 중 “**되려는**”을 “**되고자 하는 당선인이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선인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후보자등록은 임기 개시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지방의회의원 신분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격 출석(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날 자정까지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자동 산회·유회로 본다.

④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의사일정**”을 “**제1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통지하고 개의**”를 “**알리고 시작**”으로 한다.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시작일시 및 휴회기간, 심의대상 안건 등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시작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정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을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의사일정의**”를 “**당일 의사일정의**”로 한다.

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체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의사일정의 미료안건**)”을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안건**)”으로

한다.

제33조의2제4항 중 “**발언자**”를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언자**”로,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으며**”를 “**것이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해당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 또는 대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발언이 집행부의 소관사항이 아닐 경우, 보고 및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